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

이경미 ** · 노무라 미찌요 *** · 이지수 **** · 김민지 *****

1. 서론
2. 대한제국기 '육군복장규칙'의 변천
 - 1) 1895년의 복장규칙 규정
 - 2) 1897년의 복장규칙 규정
 - 3) 1906년의 복장규칙 규정
3. 대한제국기 '육군장졸복장제식'의 변천
 - 1) 제1기(1895년 4월-1897년 5월)
 - 2) 제2기(1897년 5월-1900년 7월)
 - 3) 제3기(1900년 7월-1907년 10월)
 - 4) 제4기(1907년 10월-1910년)
4. 결론

1. 서론

19세기 중후반은 서세동점의 시기로, 동아시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화 정책을 펼쳐 부국강병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제도와 군사훈련 방식을 서양화시켰고, 군복 또한 서양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서양식 군

* 본 연구는 2017년 서울시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대한제국기 수문장 교대식 복식 도안 제작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고, 2017년 10월 28일 한국복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제국기 군복 형태의 시기별 특징 연구”로 포스터 발표되었음.

**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장안대학교 관광비즈니스일어과 외국인 조교수.

**** 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 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

복은 기존의 전통복식과 달리 체형에 맞는 활동의 편리성 이외에도 근대적 군사 제도의 도입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다. 군비가 급선무였던 시대배경으로 인해 의생활의 서양화에서는 군복이 그 효시가 되었다.

조선은 서양화된 일본과 최초의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대화 초기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참고를 하였는데 군사면에서는 1881년에 교련병대 [別技隊]가 조직되어 일본인 교관 아래 처음으로 근대적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별기대의 복식은 완전히 서구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바지 저고리 위에 마고자 형태의 상의에 혁대를 매고 머리에 작은 갓을 쓴 모습이었다. 이후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군에게 훈련을 받는 친군영(親軍營)이 설치되어 청나라의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의 군복 또한 서양식이 아니라 둥근 깃을 매듭단추로 고정하는 중국식 복식이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는 다시 조선 시대 전통의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승리 후 더욱 조선을 간섭하게 된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신식으로 개편했다. 이 시기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서양식 군복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1895년의 ‘육군복장규칙’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까지 서양식 군복 제도가 유지되었다.

대한제국기의 군복은 처음으로 도입된 서양식 제복이라는 점과 일제에 병합되기 전까지 독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던 점에 의의가 있다. 군복은 경찰복 등 근대적 제도와 함께 도입된 각종 서양식 제복 형태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대한제국기의 군복은 일제 간섭의 영향이 있었지만 디자인 면에서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기 군복은 자주적인 근대화를 모색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조선시대 혹은 광복 이후 시기의 군복과는 다른 근대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한제국기 군복은 지금까지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1』과 『육군복제사』 등¹⁾

1) 한국의 군복식사를 정리한 성과로 다음 저서들이 대표적이다. 陸軍服制史編輯委員會, 1980 『陸軍服制史』, 陸軍本部: 陸軍服制史編輯委員會, 1995 『陸軍服制史』, 陸軍本部: 國防軍史研究所, 1997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1』, 國防軍史研究所: 김정자, 1998 『한국 군복의 변천사연구: 전투복을 중심으로』, 민속원. 이상의 저서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군사복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근대 군복은 일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1』

군복 전체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책의 한 챕터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법령과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서 전체상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대한제국기 군복을 다룬 논고로 「韓國 近代(1894~1910) 軍服裝 研究」는²⁾ 시기 구분을 하지 않고 복장규정과 제식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다루었다. 「大韓帝國 時代 陸軍將兵 服裝制式과 大元帥 禮·常服에 대하여」는³⁾ 육군복장의 제도 변천과 대원수 예복과 상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도 변천 부분에서는 모든 법령이 망라된 것이 아니며 시기구분은 복장규칙을 기준으로 3시기로 나누었으며 제식은 시기구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한자 사용이 많아 법령을 해석한 부분도 현대 독자들에게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대원수 예복과 상복에 대해서는 논할 내용이 많으므로 별도의 연구에서 고찰할 예정이다. 「「육군복장규칙」과 대한제국 군복」은⁴⁾ 복장규칙과 제식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역시 시기구분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95년 이후 제정된 군복 관련의 모든 법령에 대한 정리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제국기의 군복을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대한제국기 군복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1895년은 대한제국 성립 이전이지만 군복 제도의 완성을 대한제국기로 보아 함께 정리하였다.

은 '제4장 제1절 구한말(대한제국)의 군복식'이라는 부분에서, 『육군복제사』는 '제3장 제2 절 구한말(개화기)'에서 다루어졌으나 법령이 제정된 순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본 연구와 같이 명확한 시기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한국군복의 변천사연구: 전투복을 중심으로』의 경우 '제Ⅲ장 6. 근세조선' 항목에서 8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대한제국기가 부각되지 않은 구성이다.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전투복(~1880. 1884~1894) (2) 일본 군제하(軍制下)의 전투복(1881~1882) (3) 청(淸) 군제하의 전투복(1882~1884) (4) 일본 군제하의 전투복(1895~1896) (5) 러시아 군제 하의 전투복(1897~1899) (6) 한국의 자주적 군제하의 전투복(1900~1907) (7) 일본 군제하의 전투복(1907~1946) (8) 광복군의 전투복(1940.9~1946.9).

- 2) 손경자, 1974 「韓國 近代(1894~1910) 軍服裝 研究」 『수도여사대 논문집』 6, 287-307면.
 3) 李美娜, 1995 「大韓帝國時代 陸軍將兵 服裝制式과 大元帥 禮·常服에 대하여」 『學藝誌』 4, 241-277면.
 4) 김정민, 2012 「「육군복장규칙」과 대한제국 군복」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육군박물관, 206-212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한제국기 군복 차림을 규정한 ‘육군복장규칙’의 변천을 정리하고, 둘째, 군복 제작법을 규정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변천을 정리하며, 셋째, 대한제국기 군복 형태의 시기별 특징을 대표적인 사진과 유물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난해한 법령의 정리 해석과 함께 시각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대한제국기의 군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기 군복의 시기별 형태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복식 고증과 기록 사진의 시기 추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군복 이외의 서양식 제복의 형태 고찰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한제국기 ‘육군복장규칙’의 변천

1895년 서양식 육군 복장의 도입 이후부터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을 규정한 법률 중 복장규칙의 변천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⁵⁾ ‘육군복장규칙’은 총 8번에 걸쳐 변화되었는데 최초 법령인 1895년 이후 1897년, 1906년의 두 시기에 개정된 복장규칙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표 1〉 대한제국기 복장규칙 관련 법령

일번 번호	제정일	법령 종류	법령 제목	출처	법령의 간략한 내용
1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0호 개국504년 4월 11일	예장의 종류와 복식구성, 착용 상황을 규정
2	1895년 5월 25일	칙령 제123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75호 개국504년 5월 27일	육군복장을 시위대에 적용
3	1895년 8월 6일	칙령 제152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32호 개국504년 8월 8일	육군복장규칙을 군부 내무관급 상당관에 적용

5) 표의 ‘법령 종류’ 중 칙령(勅令)은 칙명(勅命)과 같은 뜻으로 임금이 내린 명령을 의미한다. 칙령에는 법령 번호가 있다. 한편 조칙(詔勅)은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말하며 번호가 제시되지 않았다.

4	1895년 8월 16일	칙령 제156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41호 개국504년 8월 19일	육군복장규칙을 외국한군인에 적용
5	1895년 9월 6일	칙령 제165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56호 개국504년 9월 8일	육군복장규칙을 일반육군군인에 적용
6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639호 건양2년 5월 18일	육군복장을 규정
7	1906년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3462호 광무10년 5월 25일	육군군인의 복장을 5종으로 규정
8	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5호	육군복장규칙 중 재정전	『관보』 제3889호 융희원년 10월 5일	소견장(小肩章) 산거(刪去)

(필자 작성)

1) 1895년의 복장규칙 규정

서양식 군복 도입의 최초 법령인 1895년 ‘육군복장규칙’은⁶⁾ 총 5장 24조로 부 칙까지 포함하면 26조로 구성되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

제2장 ‘폐착통칙(佩着通則)’(제11조~제21조)

제3장 ‘정장(正裝)’(제22조)

제4장 ‘군장(軍裝)’(제23조)

제5장 ‘예장(禮裝)’(제24조)

‘부칙(附則)’(제25조, 제26조)

제1장 ‘총칙’에서는 육군의 복장이 4종, 즉 정장(正裝) · 군장(軍裝) · 예장(禮裝) · 상장(常裝)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이를 복장을 어떤 경우에 착용하는지 설명하였다(제1조~제6조). 또한 하복(夏服)과 햇빛가리개[日遮], 외투 등 특정한 계절에 필요한 복식의 착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제7조~제10조).

제2장 ‘폐착통칙(佩着通則)’에서는 도(刀)와 검(劍), 도서(刀緒), 식서(飾緒), 현장(懸章)의 등 복장을 이루는 아이템들의 폐용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제11조~제21조).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제1장 총칙에서 제시한 복장들을 구성하는 아이템에

6)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0호, 개국504년 4월 11일.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정장을, 제4장에서는 군장을, 제5장에서는 예장을 설명하는데 예시로 제3장 ‘정장(正裝)’은 모(帽), 전립(前立), 의(衣), 고(袴), 견장(肩章), 식대(飾帶), 도[검](刀[劍]), 정서(正緒), 백혁수투(白革手套), 백포하금(白布下襟), 화(靴)로 구성된다 하였다. 또한 각각의 차림으로 승마할 경우의 마장(馬裝)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다(제22조, 제23조, 제24조).

‘총칙’에서는 또 한 가지 ‘상장(常裝)’이 제시되어 있으나 ‘상장(常裝)’ 차림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부칙’에는 이 규칙을 훈련대(訓練隊)의 보병과 장교에 적용할 것과 훈련대의 회계관과 의관의 계급장 색을 바꾸는 것에⁷⁾ 대해서 언급되었다(제25조, 제26조).

2) 1897년의 복장규칙 규정

1897년에 ‘육군복장규칙’이⁸⁾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기본적인 순서는 1895년과 동일하나 여러 변화가 있어 조문의 수가 달라졌다. 규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 제2장 ‘폐착통칙(佩着通則)’(제9조~제16조)
- 제3장 ‘정장(正裝)’(제17조)
- 제4장 ‘군장(軍裝)’[제18조, 제19조(背囊)]
- 제5장 ‘예장(禮裝)’(제20조)
- 제6장 ‘상장(常裝)’[제21조, 제22조(회계관, 의관)]
- 제7장 ‘상장(喪章)’(제23조)

1895년의 규정과 크게 다른 점은 제6장 ‘상장(常裝)’과 제7장 ‘상장(喪章)’의 추가, 그리고 ‘부칙(附則)’의 폐지이다. ‘상장(常裝)’은 1895년 규정에서 육군 군인의 복장이 정장·군장·예장·상장의 4종으로 규정되었는데도 상장 차림을 구성하는 복식 아이템의 제시가 없었다. 이 부분이 이 규정으로 보충하였다. 또 상장(喪章)은 1895년 을미사변 사건으로 국상(國喪)이 발생하여 서구식 복식을 착

7) 계급장과 그 색상에 대해서는 후술하지만, 여기에서는 군의(軍衣)의 금선을 은선으로, 바지의 측장[筋]을 회계관은 청색, 의관은 녹색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8)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639호, 건양2년 5월 18일.

용한 무관과 경관의 복식에 상장이 필요하게 되어 별도의 칙령이 규정되었고,⁹⁾ 이것이 1897년에 ‘육군복장규칙’ 제7장에 추가되었다. 이전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기물의 상장이 삭제되었고 상장의 소재가 바뀌었으며 사복(私服) 차림에서의 착용법이 추가되었다.¹⁰⁾

또 다른 점은 1895년에 부칙에서 언급되었던 군복 규정의 적용 범위가 1895년에 이루어진 네 번의 개정으로¹¹⁾ 일반 육군 군인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계관과 의관의 복장은 제6장 ‘상장(常裝)’ 제22조에 추가되어 상장(常裝)을 착용하게 되었다.

1897년의 규정은 1906년의 전면 개정까지 네 번의 개정을¹²⁾ 거쳤는데 이는 모두 제작방식, 즉 제식(製式)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음 장 제식의 변천에서 후술하겠다.

3) 1906년의 복장규칙 규정

1897년의 ‘육군복장규칙’은 190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¹³⁾ 이 규정은 기존 1897년의 제도에 비해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1906년 복장규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9) 1895년 10월 20일 칙령 제178호, ‘무관표상식’, 『관보』 호외, 개국504년 10월 21일.

10) Jisoo Lee · Kyungmee Lee, 2017 “A Study of Mourning Ribbon (Sang-jang) from the Opening of ports through the Korean Empire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17-2, p.89.

11) 1895년 5월 25일 칙령 제123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75호 개국504년 윤5월 27일(육군복장규칙을 시위대에 적용); 1895년 8월 6일 칙령 제152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32호, 개국504년 8월 8일(육군복장규칙을 군부 내무관급 상당관에 적용); 1895년 8월 16일 칙령 제156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41호, 개국504년 8월 19일(육군복장규칙을 외국한군인에 적용); 1895년 9월 6일 칙령 제165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56호, 개국504년 9월 8일(육군복장규칙을 일반육군군인에게 적용).

12) 1901년 2월 19일 정오 ‘육군복장개정’, 『관보』 제1804호, 광무5년 2월 19일; 1902년 9월 20일 정오 ‘육군복장개정’, 『관보』 제1981호, 광무6년 9월 20일; 1903년 11월 19일 정오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2674호, 광무7년 11월 19일; 1903년 12월 22일 정오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2702호, 광무7년 12월 22일.

13) 1906년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3462호, 광무10년 5월 25일.

제1장 ‘총칙’(제1조~제14조)

제2장 ‘장교의 복장’

- 기(其)1 통칙(通則) (제15조~제26조)
- 기2 대례장(大禮裝) (제27조~제29조)
- 기3 군장(軍裝) (제30조~제33조)
- 기4 예장(禮裝) (제34조~제35조)
- 기5 반례장(半禮裝) (제36조~제38조)
- 기6 상장(常裝) (제39조~제41조)

제3장 ‘하사졸(下士卒)의 복장’

- 기1 통칙(通則) (제42조~제45조)
- 기2 대례장(大禮裝) (제46조~제47조)
- 기3 군장(軍裝) (제48조)
- 기4 상장(常裝) (제49조~제50조)

‘부칙(附則)’ (제51조~제52조)

조문의 수를 비교해보면 1897년 규정은 23조, 1906년 규정은 52조로 조문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장교와 하사졸의 복장이 따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장교의 복장이 기준의 정장·군장·예장·상장의 네 종류에서 대례장·군장·예장·반례장·상장의 다섯 종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사졸의 군복은 대례장과 군장, 상장의 세 종류만 규정되었다.

그러나 대폭적으로 늘어난 ‘육군복장규칙’ 조항 수와 달리 대한제국 육군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1905년 4월에 시위대와 친위대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군대만 남게 된다. 즉 ‘육군복장규칙’이 세분화되어 정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위대와 친위대의 폐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부까지 설치되면서 육군의 실체적인 주도권이 일제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¹⁴⁾ 이 규정의 자주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육군복장규칙’은 이후 1907년 10월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¹⁵⁾ 그 내용은 제

14) 심현용, 2005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86-287면.

15) 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5호 ‘육군복장규칙 중 재정건’, 『관보』 제3889호, 읍-희원년 10월

15조와 제36조 제3항의 “一小肩章” 네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후술할 같은 날의 제식 개정으로 소견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906년까지는 제식이 복장규칙 규정에 포함되었지만 1906년의 복장규칙에는 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후술할 1907년 ‘육군복장제식’은 칙령 제26호로서 복장규칙과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었다.

3. 대한제국기 ‘육군장졸복장제식’의 변천

대한제국 최초의 서양식 군복 규정이었던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식, 즉 복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1897년 규정에서 복장규칙에 이어서 ‘육군장졸복장제식’이 게재되었으며 1906년의 복장규칙에는 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장 규칙과 제식이 법률상 분리되었다. 1907년에는 ‘육군복장제식’이 단독으로 규정되었다. 대한제국기의 군복 제식과 관련된 법령의 변화는 〈표 2〉와¹⁶⁾ 같다.

〈표 2〉 대한제국기 군복 제식 관련 법령

일련 번호	제정일	법령 종류	법령 제목	출처	법령의 간략한 내용
1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 규칙	『관보』 제10호 개국504년 4월 11일	예장의 종류와 복식구성, 착용 상황을 규정
2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 제식	『관보』 제639호 진양2년 5월 18일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
3	1898년 12월 30일	조칙	육군장졸복장 제식	『관보』 제1147호 광무3년 1월 2일	대례경장, 소례경장 개정

5일.

16) 표의 ‘법령 종류’ 중 ‘정오(正誤)’는 원래 잘못된 글자나 문구를 바로잡는다는 뜻이지만 군복 제식 관련 법령에서 ‘정오’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될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1900년 7월 2일	조칙	육군장졸복장 제식	『관보』 제1624호 광무4년 7월 12일	대례의, 상의, 대례견장 개정 교입식으로 바뀜
5	1900년 8월 31일	정오	육군복장 제식	『관보』 제1667호 광무4년 8월 31일	‘모자’란 내 첨입
6	1901년 2월 19일	정오	육군복장 개정	『관보』 제1804호 광무5년 2월 19일	대례견장 표장 개정
7	1901년 9월 2일	정오	육군장졸복장 제식개정	『관보』 제1981호 광무5년 9월 2일	‘대례의’란 내 첨입
8	1902년 9월 20일	정오	육군복장 개정	『관보』 제2310호 광무6년 9월 20일	‘대례의’란 내 첨입
9	1903년 11월 19일	정오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2674호 광무7년 11월 19일	‘소견장’란 내 첨입
10	1903년 12월 22일	정오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2702호 광무7년 12월 22일	‘정모’란 내 첨입
11	1904년 10월 13일	개정	육군장졸복장 제식	『관보』 제2958호 광무8년 10월 15일	시배종 및 친왕부 무관과 참모 관 복장
12	1905년 9월 12일	정오	육군장졸복장 제식	『관보』 제3242호 광무9년 9월 12일	‘고’란 내 부표
13	1906년 2월 15일	정오	육군장졸복장 제식	『관보』 제3377호 광무10년 2월 15일	‘상모’란 내 첨입
14	1906년 12월 12일	정오	육군복장제식 중 개정건	『관보』 제3637호 광무10년 12월 15일	‘도’란 내 개정
15	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	『관보』 제3889호 융희원년 10월 5일	육군복장제식 규정
16	1907년 11월 2일	칙령 제31호	육군복장제식 중 첨입 건	『관보』 제3916호 융희원년 11월 6일	상의 수장 장관규정 누락된 부 분 보완

(필자 작성)

군복의 제식 규정은 후대로 갈수록 상세하게 기술되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법령의 전면개정 시기와 형태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 제정에서 1897년 ‘육군장졸복장제식’¹⁷⁾ 제정까지, 제2기는 1897년 5월 ‘육군장졸복장제식’ 제정에서 1900년 7월¹⁸⁾ 개정까지, 제3기는 1900년 7월 개정에서 1907년 10월 ‘육군복장제식’¹⁹⁾ 개정까지, 제4기

17)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 『관보』 제639호, 건양2년 5월 18일.

18) 1900년 7월 2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 개정’, 『관보』 제1624호, 광무4년 7월 12일.

는 1907년 10월 개정부터 1910년 8월에 한일강제병합이 되기까지이다. 이 시기구 분에 따라 각 시기 제식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1895년 4월-1897년 5월)

제1기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 제정에서 1897년 ‘육군장졸복장제식’으로 전면 개정이 되기까지의 시기이다. 1895년 ‘육군복장규칙’은 법령에서 제식이 제시되지 않았고 『관보』에서도 별표가 생략되었지만, 『의주(議奏)』 제6책에²⁰⁾ 게재된 ‘육군장교복제도례해석(陸軍將校服製圖例解釋)’에서 복식의 제식과 도식화를 알 수 있다. 먼저 군복은 계급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복 규정에 나타난 당시 장교의 계급을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895년 ‘육군복장규칙’ 제정 당시 장교 계급

장교(將校)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대장 (大將)	중장 (中將)	소장 (小將)	정령 (正領)	부령 (副領)	참령 (參領)	정위 (正尉)	부위 (副尉)	참위 (參尉)
(필자 작성)								

1895년에 실린 복식 아이템은 모자[帽], 상의(上衣), 바지[袴], 외투(外套), 칼[刀], 정서(正緒), 식대(飾帶), 견장(肩章), 마장(馬裝)이다. 또한 ‘주번(週番) 현장(懸章) 및 대도(帶刀)’, ‘칼[刀]의 패용법[帶法]’, ‘위관 정장(尉官正裝)’, ‘위관 상장(尉官常裝)’, ‘현장(懸章) 패용법[佩方]’, ‘식서(飾緒)’, ‘칼[劍]’의 도식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 모든 도식을 <표 4>로 정리하였고 제식과 함께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²¹⁾

19) 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 『관보』 제3889호, 응희원년 10월 5일.

20)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1994 『奏本 儀註 1』, 보경문화사, 282-284면.

21) 帽 : 將領尉官은 品質은 黑絨이요 鎮는 金色(구루메로)이요 願紐은 黑革制로 ھ되 尉官은 銀色 李花章만 附하고 將官 及 領官은 各別히 銀星一個를 加함

上衣 : 品質은 黑羅紗요 鈕는 銀無地요 袖章은 將官은 金線 三個요 領官은 二個요 尉官은

첫째, 모자는 흑색 용으로 제작하였다.²²⁾ 모자에는 앞면 중앙에 은색의 이화장(李花章)과 금색의 쇠사슬이 달려 있으며 흑색 가죽의 턱끈을 달았다. 장관(將官)과 영관(領官)은 은색 별을 이화장(李花章) 위에 추가하였다. <표 4>의 도식에 의하면 모자의 전체 모양은 정수리가 둥근 형태이며 정수리 부분에 화살표 모양의 장식이 있다. 또한 <그림 1>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윤웅렬 모자 유물로 제식의 실제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단부에 붉은색 장식이 있고 정수리에는 화살표 장식이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정수리가 둥근 형태라는 점에서 형태만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생각된다.

둘째, 상의(上衣)의 재질은 흑색 나사(羅紗)인데 나사는 당시 양복 재료로 사용된 모직물을 의미한다.²³⁾ 단추는 은색이고 무늬가 없으며 수장(袖章)은 금선

一個를 附하나 但 正尉는 다시 袖端 上面의 銀色太極 鉤 三個요 副尉는 二個요 參尉는
一個를 附하고 將官과 領官도 이것을 準함, 襟章은 銀製星으로 將官은 三個요 領官은 二
個요 尉官은 一個로 흠

衿 : 品質은 黑絨이요 縫은 赤絨이니 將官은 三條요 領官은 二條요 尉官은 一條로 玆
其幅은 附圖에 示함

外套 : 品質은 黑絨이요 鉤는 銀無地요 袖章은 將官은 銀星 三個요 領官은 二個요 尉官은
一個를 附하고 其折返을 端으로 봇터 眇금 離하개 赤聳出線을 加하되 但 將官은 다시 金
線 一條을 加함

刀 : 將官은 刀柄의 金屬部에 李葉을 다 浮出彫로 ippo고 領官은 柄頭에만 同호 彫物을 施함
正緒 : 刀緒는 黑絹製로 正緒와 同호 形이며 或 黑革製로 흠

飾帶 : 將官은 帶는 赤色이요 總은 銀이요 領官은 帶 赤, 總 紫요 尉官은 帶 總 俱 赤이요
將官의 總을 除하는 外에는 皆 絹製로 흠

肩章 : 將官은 品質은 組金緣銀이요 領尉官은 組金 星章은 銀製로 ippo니 大將은 三個요 中
將은 二個요 少將은 一個니 領尉官은 이것을 倣함

馬裝 : 鞍褥 鞍囊 等 品質은 黑絨이요 襪緣은 將官은 銀으로 大小 二條요 領官은 赤絨으
로 大小 二條요 尉官은 赤絨으로 흠

22) 용은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잠 후 보풀이 일게 한 직물. 감의 촉감이 부드럽고 벌키(bulky)한 느낌을 주는” 옷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용’ (검색일 2018년 7월 9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98&cid=50345&categoryId=50345>)

23) “나사(羅紗)란 16세기경 일본에 도래한 포르투갈인들이 서양의 모직물을 치칭할 때 라샤 혹은 라이샤라고 발음한 것을 듣고 그것을 羅紗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山根章弘, 1983 『羊毛の語る日本史』, 東京: 東洋印刷株式會社, 15-17면을 이경미, 2010 「대한제국 1900년(光武4) 문관대례복 제도와 무궁화 문양의 상징성」 『복식』 60-3,

과 은색의 태극이 배치되었다. 금선은 장관(將官)이 3줄, 영관(領官)이 2줄, 위관(尉官)이 1줄이며 장관 중에서 대장(大將)은 태극이 3개, 중장(中將)은 2개, 소장(小將)은 1개이며 영관과 위관도 마찬가지다. 금장(襟章)은 은으로 만든 별이며 장관이 3개, 영관이 2개, 위관이 1개를 달았다. 〈표 4〉의 도식을 통해 이 시기의 상의가 싱글 브레스티드(Single-breasted)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쪽에 계급을 표시하는 수장의 장식도 제식과 동일하였다.

셋째, 바지의 재질은 모자와 같은 흑색 용이며 측면에 적색 용으로 줄을 다는 데 장관이 3줄, 영관이 2줄, 위관이 1줄이다.

넷째, 외투의 재질도 흑색 용이며 단추도 상의와 같은 은색 무지이다. 수장은 은색 별을 장관이 3개, 영관이 2개, 위관이 1개 달았다. 소매를 꺾어서 올린 부분에 적색 선이 밀려나오도록 하는데 장관은 거기에 금선 1줄을 추가한다.

다섯째, 칼[刀]은 장관의 경우 칼자루[刀柄] 금속 부분에 오얏잎[李葉]을 새기고 영관은 칼자루 위쪽[柄頭]에만 새긴다. 칼에 장식하는 도서(刀緒)는 흑색 견(絹)으로 만드는데 정서(正緒)와 동일한 형태이다. 또한 흑색 가죽으로도 만든다. 〈표 4〉의 도식에 도(刀)와 검(劍) 두 종류가 제시되었는데 칼날을 그리지 않아서 칼날 형태의 차이는 알 수 없었다. 또한 1895년 관보에 실린 육군복장규칙 제11조에서 도는 전열장교(戰列將校)가, 검은 비전열장교(非戰列將校)가 폐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²⁴⁾ 칼자루에는 서(緒), 또는 정서(正緒)를 장식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식대(飾帶)는 장관이 적색 띠에 은색 술, 영관이 적색 띠에 자색(紫色) 술을 달며 위관은 모두 적색이다. 장관의 은색 술 이외는 모두 견(絹)이다. 〈표 4〉의 ‘식대’ 도식에는 허리를 두르는 띠와 이를 묶어 양쪽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끝에 술이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견장은 바탕이 금색이고 장관은 은색의 테두리가 있다. 대장은 은색

127면에서 재인용.

24)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관보』 제10호, 개국504년 4월 11일 第二章 第十一條 “刀는 戰列將校가 폐용하고 劍은 非戰列將校가 폐용함”

별이 3개, 중장은 2개, 소장은 1개이며 영관과 위관도 이에 준한다. 〈표 4〉의 ‘견장’은 견장의 정면 모습뿐만 아니라 측면 모습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마장(馬裝)은 모자, 바지, 외투와 같은 재질의 흑색 용을 사용하며 안욕(鞍褥)의 테두리는 장관이 은선 대·소 2줄을 달며 영관이 적색 용 선 대·소 2줄, 위관이 적색 용 선 1줄을 달았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하면 옷감은 모두 바탕이 흑색이고 상의만 재질이 나사였으며 그 외에는 용이 사용되었다. 계급장에는 금색과 은색, 적색이 사용되었으며 상징적인 문양으로 모자에는 이화장(李花章), 수장(袖章)에는 태극, 금장(襟章)과 견장, 외투 수장에는 성장(星章)이 사용되었다. 〈그림 2〉는²⁵⁾ 이 시기 군복의 대표적인 예로 사진 속 인물은 뿔이 달린 투구형 모자와 싱글 브레스티드의 상의, 바지, 목이 높은 구두와 도대, 도를 폐용하고 있다. 그는 제식에 나타난 식대, 견장 등을 폐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규정된 복장 중 상장(常裝)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웅렬 모자



〈그림 2〉 참위
상복 착용 모습

25) 최석로, 1996 『민족의 사진첩 III 민족의 전통: 멋과 예술 그리고 풍속』, 서문당, 41면.

〈표 4〉 1895년 의주 ‘육군장교복제도례해석’ 도식

구분	참위 정장(正裝)	참위 군장(軍裝)	모자[帽]	상의(上衣)
도식				
구분	바지[下衣]		외투(外套)	
도식				
구분	칼[刀, 劍]		식대(飾帶)	견장(肩章)
도식				
구분	마장(馬裝)	현장(懸章)	식서(飾緒)	
도식				

2) 제2기(1897년 5월-1900년 7월)

1897년 5월 ‘육군장졸복장제식’이 규정되었다. 이 규정에는 복장규칙과 제식이 법률상 분리되지 않아 ‘육군복장규칙’과 함께 제식이 제시되었다. 이 규정으로부터 다음 개정인 1900년 7월까지의 시기를 제2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제식은 1897년 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1898년에 대례견장과 소례견장에 대해서 일부 개정된 내용은 법령 해석 해당 부분에 각주를 추가하였다.

제 2기의 규정에 나타난 육군의 계급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895년에는 장교의 복장만 규정되었는데 1897년에는 하사의 복장도 규정되었다.

〈표 5〉 1897년 ‘육군복장규칙’ 제정 당시 장교와 하사 이하 계급

장교(將校)										하사 이하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하사(下士)			병정(兵丁)		
대장 (大將)	부장 (副將)	참장 (參將)	정령 (正領)	부령 (副領)	참령 (參領)	정위 (正尉)	부위 (副尉)	참위 (參尉)	정교 (正校)	부교 (副校)	참교 (參校)	상등병 (上等 兵)	일등병 (一等 兵)	이등병 (二等 兵)	
(필자 작성)															

1897년의 제식에서 규정된 복식 아이템은 정모(正帽), 상모(常帽), 대례의(大禮衣), 상의(常衣), 바지[袴], 대례견장(大禮肩章), 소례견장(小禮肩章), 외투(外套), 칼[刀], 도서[刀緒], 식대(飾帶), 마장(馬裝)이다. 1897년에 규정된 제식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²⁶⁾

26) 第一 正帽 頂蓋及上半部는 黑絨質이요 下半部는 紅絨質이요 沿邊은 黑革이니 其表章은 左開와 如囪事. 頂蓋에 中心은 紅質 金飾李花章이요 其外邊은 周圍 金線兩股織이요 上半部 橋圓處는 前後左右로 豎金線兩股織이니 將官은 各三條요 領官은 二條요 尉官은 一條 下半部 橫金線兩股織이니 豎線接聯한 處에 一條를 除한 外에는 大將은 九條요 副將은 八條요 參將은 七條요 正領은 六條요 副領은 五條요 參領은 四條요 正尉은 三條요 副尉은 二條요 參尉은 一條요 正面表章은 黑質橋圓形이니 中心은 銀線金蕊李花繡章이요 左右는 金葉銀葩像生槿花兩枝繡章을 交義同結한 頤紐를 金絲圓織이요 左右鉗子各一箇는 鎏金鑄製槿花로 囪事. 會計官 軍醫等의 帽子 下半部는 各其袴縫色을 從囪事 見下第五

第二 常帽 形式과 品質은 正帽와 同호되 但 頂蓋周圍線과 上半部 豎線과 下半部 橫線은

黑絲匾織이요正面表章은 鍍金鑄製요 頤紐은 黑絲圓織으로 豪事. 下士는(正副參校同)形式이 將校와 同호되 豎線橫線은 無하고 下部 紅絨質은 兩條로 分호되 下廣(八分)上狹(二分)하고 正面表章은 鍍金鑄製李花形이요 頤紐는 黑革으로 허며 兵卒은 下士의 帽와 同호되 下部紅絨質은 單條(八分)으로 豪事

第三 大禮衣 品質은 黑絨이요 鈎子는 黑絲圓織이요 結頭는 檀花形이요 衣領과 袖口는 紅絨緣이요 左右襟及下邊은 黑絲廣織緣이니 表章은 左와 如豪事. 衣領章은 將官은 上端沿邊處에 正倒己字形金絲繡緣이요 下端은 一字形金絲繡線雙條요 正中은一條요 領官은 上端에 一字形金絲繡線一條요 下端은 二條요 尉官은 上下端에 金絲繡線各一條로 豪事. 袖章은 人字形金絲繡線이니 大將은 九條요 副將은 八條요 參將은 七條요 正領은 六條요 副領은 五條요 參領은 四條요 正尉은 三條요 副尉은 二條요 參尉은 一條요 人字線上頭는 幷金絲繡製檀花章으로 豪事

第四 常衣 製度와 品質은 大禮衣와 同호되 但 純墨色이요 衣領章은 無하고 袖章은 黑絲織으로 豪事. 下士以下是 製式이 將校와 同호되 鈎子는 隱鈎型이요 袖章은 紅色一字形으로 허되 正校는 下一條(五分) 上三條(各二分)요 副校는 下一條 上二條요 參校는 下一條 上一條로 허며 兵丁은 二分廣으로 허되 上等兵은 三條요 一等兵은 二條요 二等兵은 一條로 豪事.

第五 衿 品質은 黑絨이요 縫章은 左開와 如豪事. 將官은 三條요(左右 二條는 廣各七分中一條 三分) 領官은 二條요(廣各七分) 尉官以下은 一條니 尉官는 廣一寸이요 下士는 廣六分이요 兵卒은 廣三分이니 紅色이요 騎兵은 綠色이요 砲兵은 黃色이요 工兵은 紫色이요 軍司는 青色이요 軍醫는 玉色으로 豪事

第六 大禮肩章 品質은 金絲廣織이요 形式은 上頭長方形과 下頭橢圓形이 合成錘子形하고 上頭에 鍍金鑄製李花鈎子 一箇요 將官은 下頭에 金線網織下垂가 有하고 領官以下는 無하고 其表章은 左開와 如豪事. 將官은 下頭橢圓形上에 銀絲繡製로 像生檀花葉兩枝를 交義同結하고 正中은 紅黑色太極이요 銀絲繡星을 大將은 左右 各三個요 副將은 各二個요 參將은 各一個요 領官은 枝葉太極은 將官과 同호고 銀絲繡箭을 正領은 各三個요 副領은 各二個요 參領은 各一個요 尉官은 枝葉은 無하고 紅黑色太極뿐이요 銀絲繡箭을 正尉는 左右 各三個요 副尉는 各二個요 參尉는 各一個로 豪事

第七 小禮肩章 品質은 紅絨金線이요 形式은 長方形이니 其中心表章은 大禮肩章과 同호事. 下士는 品質은 紅絨質이요 形式은 上頭는 八角半形이요 下頭는 長方形이니 上邊에 鍍金鑄製檀花形鈎子 一個요 鈎子下黃絨橫線은 正校 三條요 副校 二條요 參校 一條요 橫線下에 隊號를 國文으로 識別하고 黃絨으로 허며 兵卒은 下士와 同호되 但 黃絨橫線은 無호事

第八 外套 品質은 黑絨銀鈎요 袖章은 左開와 如豪事. 將官은 銀星 三個요 領官은 二個요 尉官은 一個요 袖端은 赤線 一條요 其上頭에 將官은 金線兩股織 三條요 領官은 二條요 尉官은 一條로 豪事

第九 刀 刀柄에 鍍金檀花葉이요 前後面에 正中은 太極이니 將官은 全體를 雕刻하고 領官은 半分이요 尉官은 三分之一이요 刀帶는 將官은 金絲廣織이요 領尉官은 幷黑革으로 豪事

第十 刀緒 刀緒는 將領官은 金絲圓織이요 尉官以下는 黑絲圓織으로 豪事

첫째, 정모(正帽)는 계급에 있어 장교만 착용할 수 있었다. 정모의 형태는 원통형으로 정수리를 포함한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뉘는데 상반부는 흑색 용, 하반부는 홍색 용, 테두리는 흑색 가죽이다. 모자 정수리에는 홍색에 금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이화장(李花章)을 부착하고 모자 상반부와 하반부에 양고직(兩股織)의 장식을 더하였다. 양고직은 단면이 8자 모양이 되는, 두 줄을 합친 듯한 끈이다. 이것을 상반부 앞뒤좌우에 세로로, 하반부는 가로로 장식하였는데 계급마다 장식을 달리하였으며 장식법은 <표 6>과 같다. 모자 정면에는 흑색의 타원형에 금은사로 자수한 표장(表章)을 붙였는데 정중에 이화장(李花章)과 좌우에 무궁화 가지를 교차하여 수를 놓았다. 턱끈[頸紐]은 금사로 만든 등근 끈으로 모자 좌우에 무궁화문양이 들어간 도금 단추를 달았다. 특별히 회계관과 군의의 모자 하반부의 색을 봉장(縫章: 바지 측면 선)의 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육군 참위 정모 유물이며 정모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1897년 ‘육군복장제식’ 정모(正帽) 양고직 계급별 장식

계급	장교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대장 (大將)	부장 (副將)	참장 (參將)	정령 (正領)	부령 (副領)	참령 (參領)	정위 (正尉)	부위 (副尉)	참위 (參尉)
상반부	3줄			2줄			1줄		
하반부	9줄	8줄	7줄	6줄	5줄	4줄	3줄	2줄	1줄

(필자 작성)

둘째, 상모(常帽)는 장교와 하사 이하 모두 착용할 수 있던 것으로 형태와 재질이 정모와 동일한데 정모에서는 양고직 금선이었던 부분이 흑색 실로 만든 편평한 끈[黑絲匾織]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면 표장을 이화문양의 도금

第十一 飾帶 品質은 赤絲廣織이요 下垂는 將官은 銀絲垂織이요 領官은 青絲紗이요 尉官은 黃絲紗으로 袷事

第十二 馬裝 鞍褥 鞍囊은 黑絨質이요 檻緣은 將官은 金絲匾織이요 領官은 赤絨廣狹 各一條요 尉官은 一條로 袷事

한 금속으로 만들며 턱끈은 흑색 실로 만든 둥근 끈[黑絲圓繩]으로 한다. 하사 이하의 상모는 형태와 재질이 장교와 동일하나 세로선과 가로선이 없다. 대신 모자 하반부를 두 줄로 나누어 아래쪽에 너비 8분, 위쪽을 너비 2분의 홍색 용을 단다. 턱끈은 흑색 가죽으로 만든다. 병졸의 모자도 동일한 형태이지만 모자 하반부 위쪽 선을 제외한다.

셋째, 대례의(大禮衣)의 재질은 흑색 용으로 가장 큰 특징은 매듭단추 여밈이다. 앞 중심 단추는 흑사원직(黑絲圓繩)을 쓰는데 단추의 머리[結頭]를 무궁화 모양이 되도록 하였다(그림 4 참조). 칼라와 소매 수구 부분은 홍색의 용으로 쌉다[紅絨緣]. 앞 중심 좌우와 밑단에는 흑색 실로 넓게 직조한 끈[黑絲廣繩緣]으로 두른다. 대례의에는 두 종류의 계급을 나타내는 금사 자수 장식이 들어가는데 첫째는 의령장(衣領章), 둘째는 수장(袖章)이다. 의령장(衣領章)의 경우 장관은 위쪽 가장자리에 정도기자형(正倒己字形)을 수놓으며 영관, 위관은 정도기자를 제외한다. 또한 ‘一’자형으로 계급을 표시하는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수장은 ‘人’자형으로 수놓으며 대장부터 9줄,부장은 8줄, 참장은 7줄 등 계급이 내려갈수록 1줄씩 제외한다. 또한 ‘人’자선의 뾰족한 부분에는 금사로 자수한 무궁화 문양[槿花章]를 둔다. 대례의 유물로는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영환 유물이 있다(그림 7²⁷⁾).

<표 7> 1897년 '육군복장제식' 대례의 의령장(衣領章) 계급별 장식

계급	장교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대장 (大將)	부장 (副將)	참장 (參將)	정령 (正領)	부령 (副領)	참령 (參領)	정위 (正尉)	부위 (副尉)	참위 (參尉)
상	정도기자(正倒己字) 일자(一字) 1줄			일자(一字) 1줄			일자(一字) 1줄		
하	일자(一字) 2줄			일자(一字) 2줄			일자(一字) 1줄		

(필자 작성)

27) 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부, 2005 『死而不死 민영환』, 고려대학교 박물관, 21면.

넷째, 상의(常衣)는 형태와 재질이 대례의와 동일하나 색상은 순묵색(純墨色)이다. 의령장이 없으며 수장은 흑색 실로 만든 끈[黑絲織]으로 한다. 하사 이하의 상의는 장교와 형태는 동일하나 단추를 숨은 단추[隱釦]를 쓴다. 또한 수장은 ‘一’자형으로 홍색을 붙이는데 하사와 병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교의 경우 너비 5분의 홍색 선 1줄을 고정하고 계급간의 차이를 두지만 병정은 고정 선이 없다. 계급을 나타내는 홍색 선은 너비 2분으로 정교 3줄, 부교는 2줄, 참교는 1줄이다. 병정은 상등병 3줄, 1등병 2줄, 2등병 1줄이다. <그림 4>는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의 유물로 무궁화문양의 장식과 매듭단추가 특징이며 <그림 7>의 대례의와 칼라와 수장의 색상, 장식 등에서 간소화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바지는 흑색 용으로 만들며 바지 측면에 봉장(縫章)을 두는데 봉장은 계급과 각 병과(兵科)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선의 너비와 두는 개수에 따라 계급 차이가 있는데 장관은 너비 7분으로 2줄이며 그 사이에 3분 1줄을 두었다. 영관은 너비 7분 2줄, 위관 이하는 1줄이다. 위관은 너비 1촌, 하사는 너비 6분, 병졸은 너비 3분이다. 봉장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홍색으로 하나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 공병은 자색, 군사는 청색, 군의는 옥색으로 하였다. 이 색상의 차이는 모자와 상의(上衣) 규정에서 ‘홍색[紅]’으로 규정된 각 부분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모와 상모 정수리 부분의 이화장과 모자 하반부, 대례의의 칼라와 수구, 하사 이하 상의(常衣)의 수장이다.²⁸⁾

여섯째, 대례견장은 금색 실로 만든 장방형(長方形)과 타원형을 합쳐서 만든 모양으로 장방형 부분에 도금을 한 금속제 이화 단추 1개를 단다. 대례견장은 계급 표시에 있어 타원형 아래 다는 술의 유무와 붙이는 계급장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타원형 아래에 다는 술은 장관은 달지만 영관 이하에는 술이 없다.²⁹⁾

28) 바지 이외의 부위에서 봉장의 색상[袴縫色]을 따른다는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정모 하반부에 대해서만 명기되었지만 모자 정수리 부분의 이화 안쪽 부분과 대례의의 것, 그리고 수구도 바지 측면 선의 색상을 따르고 있는 것을 육군박물관 등에 소장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의(常衣)의 하사 이하 수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재 시각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29) 1898년에 영관도 금선 그물 직조 술[金線網織下垂]을 달도록 개정되었다(1898년 12월 30일 조칙, 『관보』 제1147호, 광무3년 1월 2일).

계급장은 타원형에 부착하는 것으로 표장법도 장관, 영관, 위관 모두 차이가 있다. 장관은 교차된 무궁화 나뭇가지를 은사로 수놓고 그 중앙에 흥색과 흑색의 태극을 둔다. 좌우에는 별 3개를 각각 은사로 수놓는데 가장 높은 계급부터 양쪽 하나씩 제외하였다(그림 5³⁰⁾ 참조). 영관의 경우 태극과 나뭇가지 장식은 장관과 동일하나 좌우의 별 대신 화살 모양을 두었다. 위관은 타원형 중앙에 장식이 없는 태극만 두었고 좌우에 화살 문양을 자수하였다.

일곱째, 소례견장은 흥색 용과 금색 선으로 만든 장방형이며 가운데에 두는 표장은 대례견장과 동일하다. <그림 6>은 정위의 소례견장으로 가지가 없는 태극무늬와 좌우 화살표 3개를 달았다. 하사 이하의 소례견장은 재질은 같지만 형태가 팔각형을 반으로 자른 모양과 장방형이 합쳐진 형태이다. 팔각형 쪽에 도금한 무궁화형 단추를 1개 달았다. 단추 아래에 황색 용으로 가로선을 두는데 계급 순으로 차이를 두었으며 병줄은 가로선이 없다. 또한 대호(隊號)를³¹⁾ 황색 용으로 한글로 넣었다.

여덟째, 외투는 흑색 용 재질로 은색 단추를 달았다. 외투의 수장은 은색 별, 수구에 적색 선과 양고직으로 장식하는데 별과 양고직은 계급마다 차이를 두었다.

아홉째, 도(刀)는 손잡이[刀柄]에 도금한 근화 잎[鍍金槿花葉]과 앞뒤면 정중앙에 태극을 조각한다. 근화 잎은 장관은 전체에 조각을 넣고 영관은 반만 넣으며 위관은 3분의 1만 넣는다. 도대(刀帶)는 장관의 경우 금사로 짠 것[金絲廣織]을 쓰고 영관과 위관은 모두 흑색 가죽을 쓴다.

열째, 도서(刀緒)는 장관과 영관의 경우 금사로 둥글게 짠 끈[金絲圓織]이고 위관 이하는 흑색의 둥근 끈이다.

열한째, 식대(飾帶)는 적색 넓은 끈[赤絲廣織]에 술을 두는데[下垂]은 장관은 은사수직(銀絲垂織), 영관은 청사인(青絲紉), 위관은 황사인(黃絲紉)을 쓴다(그림 7 참조).

열두째, 마장(馬裝)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안장에 까는 요와 안장에 달린 주머

30) 유희경 · 이강칠 · 이순자 · 혜동화 1991 『大韓帝國時代文物展』, 한국자수박물관출판부.

31) 1898년에 '대호(隊號)'가 '연대호(聯隊號)'로 개정되었다(1898년 12월 30일 조칙, 『관보』 제1147호, 광무3년 1월 2일).

니에 대한 것이다. 재질은 흑색 용이고 요 테두리에 장관은 금사로 짠 평평한 끈을 두르며 영관은 적색 용으로 넓은 선과 좁은 선 각 1줄, 위관은 1줄을 두른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를 정리하면, 1897년 규정을 이전 규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교의 경우 모자와 상의(上衣), 견장에서 예복용과 상복용으로 두 가지씩 규정되었다. 즉 정모와 상모, 대례의와 상의(常衣), 대례견장과 소례견장이다. 둘째, 하사 이하의 복장도 규정되었다. 다만 하사 이하는 예복과 상복의 차이가 없어서 정모와 대례의, 대례견장이 없고 상모, 상의(常衣), 소례견장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상의(上衣)의 여밈이 싱글 브레스티드(Single-breasted)에서 매듭 장식이 있는 늑골복(肋骨服) 형태로 바뀌었다. 단 하사 이하는 숨은 단추로 여미는 형태이다. 넷째, 병과마다 바지 측면 선의 색상이 규정되어 그 색상이 모자와 상의(上衣) 장식에 적용되었다. 다섯째, 장교의 수장이 ‘人’자형으로 변화되었다.

문양은 이화문양과 무궁화문양, 태극문양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 모자 정수리 부분과 정면 표장, 견장의 단추에 이화가 사용되었으며, 모자 표장과 턱끈 고정 단추, 상의(上衣) 매듭단추 끝부분, 수장 ‘人’자형 끝부분, 대례견장, 소례견장, 칼자루에 무궁화 문양이 사용되었다. 또한 대례견장과 칼자루에 태극문양이 사용되었다. 별과 화살은 계급을 나타내는데 견장과 외투 수장에 사용되었다.

〈그림 8〉은³²⁾ 이 시기에 해당하는 복식 착장 사진자료로 정모와 대례의, 하의를 착용하고 대례견장, 식대, 도를 패용하고 있다. 1897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르면 정장(正裝)에 해당하는 복장이다. 또 다른 자료인 〈그림 9〉는³³⁾ 정장 차림의 장관을 그린 것으로 세부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모의 하반부와 소매 수구, 식대에 붉은색을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제식에 제시된 색상 배치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림 10〉³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모자와 상의, 하의를 착용하고 소례견장과 장갑, 도대, 도를 패용하고 있어

32) 정수인·안현정·서영희·이정희·서울역사박물관, 2012 『정동 1900』,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121면.

33) 국립민속박물관, 2006 『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국립 민속박물관, 302면.

34) 최석로, 앞의 책, 49면.

군장(軍裝) 차림에 해당된다. <그림 8>의 예복과 같은 늑골형 상의(上衣)이지만 길이가 더욱 짧고 모자의 표장도 금속제이다. <그림 10>의 좌우 두 명은 늑골형 상의가 아닌 단추가 없는 싱글 브레스티드 상의를 착용하고 소매에 ‘人’ 대신 ‘一’자형 수장으로 장식한 것으로 보아 하사 이하의 계급으로 생각된다.



3) 제3기(1900년 7월-1907년 10월)

제3기를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한 1900년의 규정은 1895년과 1897년의 규정과

달리 전면개정이 아니라 부분 개정이다. 그러나 상의(上衣)의 여밈 부분에서 형태적으로 특징적인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태적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 개정된 부분은 대례의, 상의(常衣), 대례경장으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대례의는 재질이 이전과 동일한 흑색 용이나 형태, 길이와 뒤티임 등이 변화되었다. 길이는 체형에 따라 다른데 퇴골(腿骨)에 닿도록 하며 뒷자락은 5촌을 트이게 하여 트임 양쪽에 길이 5촌, 너비 1촌의 홍색 용을 붙이는데 위쪽은 뾰족하게, 아래쪽은 넓게 하며 도금을 한 무궁화무늬 단추를 각 3개씩 달도록 하였다. 앞여밈은 안자락과 겉자락이 겹치는 더블 브레스티드(Double-breasted) 형태로 도금한 무궁화 문양 단추를 흉부 좌우에 각 7개씩을 단다. 칼라와 수구

35) 第三 大禮衣 品質은 黑絨이요 衣長은 體形大小를 隨호야 腿骨에 至호고 後裾五寸를 直割
호야 分割處兩傍에 長五寸廣一寸 紅絨를 付着호되 上尖下廣호고 鎏金槿花鉤子 各三個요
鉤子는 鎏金槿花形이니 胸部左右에 各七個요 衣領과 袖口는 紅絨緣이요 左右襟及後裾分
割處는 紅絨線이니 表章은 左와 如호 事. 衣領章은 將官은 上端沿邊處에 正倒己字形金絲
繡緣이요 下端은 一字形金絲繡線 雙條요 正中은 一條니 左右金絲繡星各 三個요 領官은
上端에 一字形金絲繡線 一條요 下端은 二條니 左右金絲繡星 各二個요 尉官은 上下端에
金絲繡線 各一條니 左右金絲繡星 各一箇로 호 事. 袖章은 紅絨緣上에 人字形線이니 正倒
己字形金絲繡緣이요 次에 金線兩股織이니 正到己字形金絲緣 一條를 除호 外 大將은 九
條요 副將은 八條요 參將은 七條요 正領은 六條요 副領은 五條요 參領은 四條요 正尉은
三條요 副尉은 二條요 參尉은 一條니 人字線頭上에 金絲繡製槿花章과 金絲廣織緣下에
鎔金槿花鉤子 三個를 并付着호 事. 但 憲兵은 製度와 表章이 此規則과 同호되 大禮衣常
衣 品質은 茶色絨으로호 帽子下半部及衿縫은 並白色으로 호 事

第四 常衣 製度와 品質은 大禮衣와 同호되 衣領章은 無호고 衣領上下端에 紅線 各一條요
左右金絲繡星은 銀星으로호고 鉤子는 鎔金槿花形으로 左右襟合處에 七個요 後裾分割處
兩傍에 付着호 紅絨은 黑絨으로호 紅色으로 繞線호며 袖章에 金絲緣은 黑絲織으로호
되 衣領과 袖口에 紅絨緣과 鉤子는 無호 事

第六 大禮肩章 品質은 金絲廣織이요 形式은 上頭長方形과 下頭橢圓形이 合成錨子形호고
上頭에 鎔金鑄製李花鉤子 一個요 將領官은 下頭에 金線網織下垂가 有호고 尉官은 無호
고 其表章은 左開와 如호 事. 將官은 下頭橢圓形上에 金絲繡星을 像生槿花葉兩枝를 交義
同結호고 正中은 紅黑色太極이요 金絲繡星을 大將은 左右 各三個요 副將은 各二個요 參
將은 各一個요 領官은 枝葉太極은 將官과 同호고 金絲繡星을 正領은 各三個요 副領은 各
二個요 參領은 各一個요 尉官은 枝葉은 無호고 紅黑色太極뿐이요 赤絲繡星을 正尉는 左
右 各三個요 副尉는 各二個요 參尉는 各一個호 事

는 홍색 용이며 칼라 좌우와 뒷자락이 트인 부분에 홍색 용 선을 두른다. 의령장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나 별 문양의 계급장이 추가되었다. 별 문양은 좌우에 금사로 수를 놓으며 장관은 3개, 영관은 2개, 위관은 1개이다. 수장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와 동일하나 ‘人’자의 표현 방식이 금사자수에서 금선 양고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양고직 ‘人’자 아래 금사로 만든 끈[金絲緣]으로 정도기자형을 1줄 추가하였고 그 아래에는 도금한 무궁화 문양 단추 3개를 단다.

〈그림 11〉은³⁶⁾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대례의 유물로 제식의 실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제식에는 현병의 대례의에 대해서도 제정되었는데 제도와 장식이 위 규칙과 동일하지만 대례의와 상의(常衣)의 재질은 다색(茶色) 용으로 하고 모자 하반부와 바지 측면의 선은 백색으로 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의(常衣)는 형태와 재질이 대례의와 동일하나 의령장은 없다. 칼라 전체를 홍색 용으로 덮는 대신 위아래 가장자리에 홍선을 1줄씩 넣고 좌우에 금사로 수놓았던 별을 은색으로 한다. 앞중심 여밈은 무궁화문양이 들어간 도금 단추를 7개 달되 좌우의 칼라가 만나는 곳에 단다. 즉 상의는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뒤트임은 대례의와 동일하며 뒷자락을 홍색 용 대신 흑색 용을 쓰고 홍색 선으로 태두리를 장식한다. 수장은 흑색 실로 찐[黑絲織] 선 [緣]으로 하는데 의령(衣領)과 수구에 홍색 용과 단추는 없다. 〈그림 12〉는³⁷⁾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영환의 유물이며 대례의와 상의가 같은 형태였던 이전시기와 달리 실생활에 맞춰 장식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간소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례견장은 이전 시기와 형식은 동일하나 계급을 나타내는 문양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전 시기는 별, 화살 문양으로 계급의 차이를 두었다면 이 시기에는 화살 문양이 생략되고 별 문양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장관의 경우 타원형 자수 장식 좌우에 금사로 별을 수를 놓았고 영관은 은사로, 위관은 나뭇가지 장식이 없는 태극 좌우에 적색 실(1901년 2월에 은색 실로 개정³⁸⁾) 별을 수놓았다.

36) 육군박물관, 2011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171면.

37) 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부, 앞의 책, 22면.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상의(上衣)의 앞여밈이 매듭단추에서 금속단추가 된 점이다. 대례의는 단추가 두 줄, 즉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이 되었으며 상의(常衣)는 단추가 한 줄, 즉 싱글 브레스티드로 변화하였다. 칼라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별 문양을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대례의의 경우 금색, 상의(常衣)의 경우 은색으로 하였다. 수장은 ‘人’자형이 기존 금사로 수를 놓던 것에서 금선 양고직이 되었다. 수구에 금속제의 단추도 달게 되었으며 헌병의 규정도 추가되었다. 상의(常衣)의 색상은 순묵색(純墨色)에서 대례의와 같은 흑색이 되었다. 대례견장은 장식 중 장관의 은사로 자수한 별이 금사가 되었으며, 영관은 은사로 자수한 화살 문양이 별 문양으로, 위관은 은사로 자수한 화살 문양이 적색 실로 자수한 별 문양이 되었다가 1901년에 은사로 바뀌었다. 상의(常衣)의 하사 이하 규정이 생략되었는데 하사 이하는 기존의 상의(常衣)를 계속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00년 규정은 1907년에 전면개정 되기까지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이들 중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1년에는 군악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³⁹⁾ 군악대는 칼라 좌우에 금사로 직조한 악기형의 의령장을 달며 모자에 깃털로 만든 입전모(立前毛)를 꽂도록 하였다. 모자의 상반부와 바지는 흥색으로, 바지의 봉장은 흑색으로 용을 쓰도록 하였다. 1902년에는 기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⁴⁰⁾ 기병은 대례의와 상의(常衣), 모자 상반부를 흥색 용으로 하였다. 1903년에는 헌병 소례견장에 ‘헌(憲)’자가 추가되었으며⁴¹⁾ 공병의 모자 상반

38) 1901년에 “赤”자가 “銀”자로 변경된다(1901년 2월 19일 정오, 『관보』 제18047호, 광무5년 2월 19일).

39) 1901년 9월 2일 정오, 『관보』 제1981호, 광무5년 9월 2일 “詔勅 中 第三 大禮衣 左開 袖章次에 「下士以下는 製式이 將校와 同호되 鈿子는 鎏金槿花形으로 左右 襪合處에 七個 요 衣領章은 無호되 軍樂隊는 左右에 金絲織으로 樂器形 各一이요 袖章은 常衣와 同호고 帽前庇上에 立前毛를 插喜事」 八十字와 其次但憲兵下에 「과軍樂隊」 四字와 同호되 下에 「憲兵은」 三字와 並白色下에 「이요軍樂隊는 帽頂蓋及上半部는 紅絨質이요 衫品質은 紅絨이요 縫章은 黑色」 三十二字를 並添入改付標호이라”

40) 1902년 9월 20일 정오, 『관보』 제2310호, 광무6년 9월 20일 “詔勅 中 第三 大禮衣 袖章次 但 憲兵과 下에 騎兵과 三字를 添入하고 同項 中 並 白色이요 下에 騎兵은 大禮衣 常衣 品質은 紅絨이요 帽頂蓋及上半部는 紅絨質이요 二十八字를 添入付標호이라”

부는 황색 용이 되었다.⁴²⁾

1904년에는 직함에 따른 규정이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⁴³⁾ 그 중에서도 모자는 병과에 따른 차이를 없애고 보병과 제식에 따르게 된 점이 주목된다. 1905년에는 군의의 바지 측면 선 색이 옥색에서 유록(柳綠)색으로 변경되었다.⁴⁴⁾ 1906년에는 상모를 정수리 부분이 평평한 형태로 개정하였고 재질은 상반부는 흑색 용, 하반부는 홍색 용을 쓰도록 하되 봉합되는 부분을 홍색 용의 가는 선[紅絨細線]으로 두르도록 하였다. 정면 표장은 도금한 금속제로 좌우에 무궁화가지 장식이 있는 이화이며 턱끈은 흑색 가죽으로 하였다.⁴⁵⁾ 또한 전술했듯이 1906년에는 ‘육군복장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섯 가지 복장에 맞게 도대 규정이 개정되었다.⁴⁶⁾

41) 1903년 11월 19일 정오, 『관보』 제2674호, 광무7년 11월 19일 “詔勅 中 第七 小肩章 左 第二項 次의 「但 憲兵은 憲一字를 漢文으로 識別케 声事」 十七字를 添入付標함이라”

42) 1903년 12월 22일 정오, 『관보』 제2702호, 광무7년 12월 22일 “詔勅 中 第一 正帽 左開 第二項 中 帽子 下半部는 各其袴縫色를 從下에(호되 工兵은 帽子 上半部를 黃絨質로) 十五字를 添入改付票함이라”

43) 1904년 10월 13일 宮廷錄事, 『관보』 제2958호, 광무8년 10월 15일 “一 侍陪從 及 親王府 武官과 參謀官 服裝은 前 元帥府服裝規例를 因用함이라 侍陪從 及 親王府武官은 特別호 紀章이 有함이라

- 一 參謀 館緒는 參謀部官員이라도 現任參謀官 外에는 館緒를 懸치 못함이라
- 一 高等副官(旅團以上)은 副官章을 懸호되 黃色懸章을 用함이라
- 一 週番懸章은 紅色懸章을 用함이라
- 一 軍人の 帽子는 各兵科를 勿論하고 齊一히 步兵科帽子製式을 適用함이라
- 一 各部使喚軍 袖章은 如左히 定함이라(袖章은 紅色)”

44) 1905년 9월 12일 정오, 『관보』 제3242호, 광무9년 9월 12일 “開國五百六年五月十五日 特 下陸軍將卒服裝製式 中 第五 袴軍醫는 下에 玉字를 柳綠二字로 改付票함이라”

45) 1906년 2월 15일 정오, 『관보』 제3377호, 광무10년 2월 15일 “開國五百六年五月十五日 詔勅 陸軍將卒服裝製式 中 第二에 「形式과 品質은 正帽와 同호되 但 頂蓋 周圍線과 上半部 縱線과 下半部 橫線은 黑絲區織이오 正面 表章은 鍍金鑄製오 願紐는 黑絲圓織으로 五十六字는 刪去호고」 「頂蓋는 平圓形이니 黑絨質이오 周圍上部는 黑絨質이며 下部는 紅絨質이니 頂蓋와 周圍上部 交縫處는 紅絨細線으로 圍호고 正面表章의 形式은 中央 李花오 左右部는 槿花兩枝로 交叉호되 鍍金鑄製오 願紐는 黑革으로 用호고 式樣은 將領尉官并相當官이 異同이 無호되 光武十年五月一日부터 施行」一百二十二字로 添入改付票함이라”

46) 1906년 12월 15일 정오, 『관보』 제3637호, 광무10년 12월 15일 “勅令第七十六號 陸軍服裝製式 中 改正件 開國五百六年五月十五日 特下陸軍將卒服裝製式 第九項 中 廣織不에(으)

〈그림 13〉은⁴⁷⁾ 정장 차장의 민영환 사진으로 상의(上衣)는 이 시기의 군복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을 착용하고 있다. 좌우 어깨에 대례견장, 식서, 바지, 식대, 도대, 도, 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정모가 턱자 위에 올려져 있는데 입전모(立前毛)가 장식되어 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걸친 것은 대수(大綬)라고 하는 것으로 왼쪽 가슴에 단 메달과 함께 대수정장(大綬正章)의 세트로 훈장규정에 따른 것이고 군복의 복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림 14〉는⁴⁸⁾ 당시의 육군을 그린 일러스트자료로 세부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군복의 색상배치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측 상단에 일러스트의 제목으로 ‘대대장 대례복 입은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정장 차림의 육군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의의 끝단을 붉은색의 선으로 둘렀으며 소매의 수구와 바지 봉장의 색상이 모두 같은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⁴⁹⁾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 즉 상의(常衣)를 착용한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좌측 테이블 위에 상모를 올려두고 좌우 어깨에 소례견장을 걸고 왼쪽 어깨에 식서와 허리에 도대, 도를 착장하고 있다. 〈그림 16〉은⁵⁰⁾ 부분적인 색을 확인할 수 있는 일러스트 자료로 모자 정수리 부분이 편평한 것으로 보아 1906년 부분 개정된 후의 상모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요 領尉官은 幷黑革으로)十一字는 刪去하고 (이니 大禮裝 禮裝 半禮裝에 用하고 軍裝 常裝에는 領官用革製를 用하고 領官은 革製니 裏面은 紅色이오 尉官은 領官用과 同하고 裏面은 青色이니 領尉官의 刀帶는 如何하고 服裝을 勿論하고 幷用) 七十八字를 添入하고 이라”

47) Courant, Maurice 외, 2010 『서울의 추억』,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183면.

48)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304면.

49) 이돈수 · 이순우, 2009 『꼬레아 에 꼬레아니(사진해설판) 100년 전 서울 주재 이탈리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의 대한제국 견문기』, 하늘채, 248면.

50)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311면.



〈그림 11〉 육군박물관
이도재 부장예복



〈그림 12〉 고려대학교
민영환 상의(常衣)



〈그림 13〉 민영환 군복
착용 사진



〈그림 14〉 대대장 대례복
일러스트



〈그림 15〉 조동윤 군복
착용 사진



〈그림 16〉 1906년 추정 군장
차림의 일러스트

4) 제4기(1907년 10월-1910년)

제4기는 1907년 10월 ‘육군복장제식’의 전면개정을⁵¹⁾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제국 육군은 1905년 이후 대폭 축소되었고 1907년에는 황실호위를 위한 시위연대 제2대대 이외의 모든 부대가 해산되었다. 그러므로

51) 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 『관보』 제3889호, 응희원년 10월 5일.

이 제도는 일제 주도하에서 시위연대 제2대대에만 적용된 제도이다. 1907년 법령으로 규정된 복식 아이템은 예모(禮帽), 상모(常帽), 예의(禮衣), 상의(常衣), 예고(禮袴), 상고(常袴), 예견장(禮肩章), 도(刀), 도서(刀緒), 식대(飾帶), 식서(飾緒), 현장(懸章), 하의고(夏衣袴), 외투(外套), 견폐[肩蔽; 망토]이다. 법령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⁵²⁾

52) 勅令第二十六號 陸軍服裝製式

第一 禮帽 頂蓋及上半部는 黑絨質이오 下半部는 紅絨質이오 沿邊은 黑革이니 其表章은 左開와 如喜. 頂蓋에 中心은 紅質金飾李花章이오 其外邊은 周圍金線兩股織이오 上半部 橢圓處는 前後左右로 豎金線兩股織이니 將官은 各三條오 領官은 二條오 尉官은 一條오 下半部 橫金線兩股織이니 壓線聯接處에 一條를 除한 外에는 大將은 九條오 副將은 八條오 參將은 七條오 正領은 六條오 副領은 五條오 參領은 四條오 正尉은 三條오 副尉은 二條오 參尉은 一條오 正面表章은 黑質橢圓形이니 中心은 銀絲金蕊李花繡章이오 左右는 金葉銀葩像生槿花兩枝繡章을 交義同結하고 願紐은 金絲織線이오 左右 鈎子各一個는 鍍金鑄製李花豆 亨고 前面 下端에 前庇를 附한 黑革製 半月形으로 흠. 將校相當官의 帽子 下半部는 各 其定色을 從喜.

第二 常帽 頂蓋는 圓形이니 周圍上部는 茶褐色絨質이오 下部는 紅絨質이니(單條八分) 頂蓋와 周圍上部 交縱處는 紅絨細線으로 圍한 正面 表章의 形式은 中央李花오 左右는 椿花兩枝로 交義호되 鍍金鑄製오 願紐은 黑革製로 用한 左右鈎子各一個은 鍍金鑄製李花豆 亨고 前面下端에 前庇를 付한 黑革製半月形으로 亨고 式樣은 將領 尉官 并相當官 及 準士官이 同一케 흠 下士卒 及 武官生徒의 帽式과 將校의 常帽 製式과 同一케 호되 正面表章은 鍍金鑄製李花形(長廣四分)을 付함.

第三 禮衣 品質은 黑絨(騎兵은 紅絨質노 흠)이오 衣長은 體形大小를 隨한 야 項部에서 (骨+退)骨에 至한 後裾五寸을 直割한 야 分割處兩傍에 長五寸 廣一寸 色絨(各兵科定色을 依함)을 付着호되 上尖下廣한 고 鍍金李花鈎子各三個을 鍍金李花形이니 胸部 左右에 各七個을 衣領과 袖口는 色絨緣(各兵科定色을 依함)이오 左右襟 及 後裾分割處는 色絨線(各兵科定色을 依함)이니 表章은 左와 如喜 衣領章은 將官은 上端沿邊處에 正倒已字形 金絲繡緣이오 下端은 一字形 金絲繡線 雙條을 正中은 一條니 左右金絲繡星各三個을 領官은 上端에 一字形 金絲繡線一條을 下端은 二條니 左右 金絲繡星各二個을 尉官은 上下端에 金絲繡線各一條니 左右 金絲繡星各一個로 흠 袖章은 色絨緣上에 人字形線이니 正倒已字形 金絲繡緣이오 次에 金絲兩股織이니 正倒已字形 金絲緣一條를 除한 外에 大將은 九條을 副將은 八條을 參將은 七條을 正領은 六條을 副領은 五條을 參領은 四條을 正尉은 三條을 副尉은 二條을 參尉은 一條니 人字線上에 金絲繡製李花章과 金絲廣織緣下 鍍金李花鈎子를 左右에 各三個式 付함.

第四 常衣 常衣는 茶褐色絨質이니 長은 項部에서 腹下와 腿部에 至한 고 前衽 左右合結處에 鍍金製圓形鉗 五個을 胸部左右와 腹部左右에 隱囊을 付호되 胸部左右에는 合蓋處에 鍍金製圓形小鉗一個을 袖章은 袖端 前面 約二寸上에 鍍金製 小李花鉗을 橫付호되

將官及相當官은 三個오 領官及相當官은 二個오 尉官及相當官은 一個오 其上에 領尉官及同相當官은 各兵科 及 相當官의 定色으로 紵細線一條오 其上은 茶褐色 緜織線이니 大將 正領 正尉는 各三條오 副將 副領 副尉는 各二條오 參將 參領 參尉는 各一條니 一字形으로 橫付하고 下士卒 及 武官生徒의 常衣는 茶褐色絨質이니 製式은 將校 常衣와 同一호이 袖章은 袖端 前面 約二寸上에 各兵科定色으로 紵細線을 橫付하고 其次에 茶褐色絨條로 階級을 區別하고 下士는 廣條(三分)一條를 付하고 其上에 正校는 細條(廣一分)三이오 副校는 二오 參校는 一이오 上等兵 一二等卒은 廣條만 除하고 階級대로 一條式遞減하고 武官生徒는 袖端 前面 約二寸上에 紅色細絨線一條를 人字形으로 付하고 鈿는 赤銅製로 흠 第五 禮衿 品質은 黑絨質長衿(騎兵將校는 短衿을 着함)니 長은 體形을 隨하야 腹部에서 踵下에 至하고 縫章은 將官은 三條오(左右二條는 廣各六分 中一條는 一分) 領官은 二條오(廣各六分) 尉官은 一條니(廣一寸) 縫章定色은 將官及步兵科는 紅色이오 騎兵은 綠色이오 砲兵은 黃色이오 工兵은 紫色이오 計官은 青色이오 醫官은 深綠色으로 흠

第六 常衿 品質은 茶褐色絨質이오 長은 體形을 隨하야 腹部에서 踵下에 至하고 左右 縫章은 將校同相當官이 紅色絨細線一條를 付하고 便宜를 從하야 乘馬本分은 短衿(縫章과 品質은 常衿와 同하)를 製着하고 下士卒과 武官生徒衿의 製式과 縫章은 將校와 同하

第七 禮肩章 品質은 金絲廣織이오 形式은 上頭長方形과 下頭橢圓形이 合成錐子形하고 上頭에 鍍金鑄製李花鉤子 一個오 將領官은 下頭에 金線綱織下垂가 有하고 尉官은 無하고 其表章은 左와 如하 將官은 下頭橢圓形上에 銀絲繡製呈 像生槿花葉兩技를 交義同結하고 正中은 紅黑色太極이오 金絲繡星을 大將은 左右 各三個오 副將은 各二個오 參將은 各一個오 領官은 枝葉太極은 將官과 同하고 銀絲繡星을 正領은 左右 各三個오 副領은 各二個오 參領은 各一個오 尉官은 枝葉은 無하고 紅黑色太極을 依하 銀絲繡星을 正尉는 左右 各三個오 副尉는 各二個오 參尉는 各一個로 흠

第八 刀 刀柄에 鍍金槿花葉이오 前後面에 正中은 太極이니 將官은 全體를 雕刻하고 領官은 半分이오 尉官은 三分一이오 刀帶는 黑革製를 用하니 將領官은 裏面이 紅色이오 尉官은 裏面이 青色으로 흠야 如何하 服裝을 勿論하고 并用하

第九 刀緒 刀緒는 將領官은 金絲織線이니 其端에 鷄卵形金線製를 付하고 尉官 以下은 黑絲織線으로 上과 同하

第十 飾帶 品質은 赤絲廣織(一寸)이오 下垂는 將官은 金絲紗이오 領官은 紫青絲紗이오 尉官은 黃絲紗으로 有하고 兩端結合處에 鍍金製 合解樞를 付하고

第十一 飾緒 品質은 金絲線製 或 紗絲線製呈 흠

第十二 懸章 品質은 紗絲廣織(一寸)이오 同色絲紗을 下垂하고 高等官衙副官과 傳令使는 黃色을 用하고 衛戍服務者 及 週番은 紅色을 用하

第十三 夏衣衿 品質은 茶褐色細縷 或 木絲織이니 製式은 冬衣衿와 同一호이 領尉官 及 同相當官과 下士卒武官生徒의 袖端에 定色細絨線과 將領尉官 及 相當官 下士卒武官生徒의 衿의 縫章은 無하고 但 武官生徒는 袖端 約二寸上에 茶褐色細條로 人字形을 付하고

第十四 外套 品質은 茶褐色絨質이니 長은 頸部에서 膝下에 至하고 袖章은 各 常衣袖章에 依하고 階級絨線票를 除하고 常衣에 付하고 鍍金圓形製鉤를 前面 左右에 各五個式 付하고 後面 臀部以下로 直割하고 角鉤 三個를 隱付하고 始上部割處에 同色絨을 一字形으로

첫째, 예모(禮帽)는 이전 시기의 정모와 제식이 동일하다. 모자 앞면 아래쪽 끝에 흑색 가죽으로 만든 반월형의 차양을 붙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장교 상당관의 모자 하반부는 병과마다 정해진 색상을 따르도록 하였다.

둘째, 상모(常帽)는 정수리 부분이 1906년에 개정된 평원형에서 원형(圓形)으로 개정되었다. 상부는 다갈색 용, 하부는 홍색 용인데 너비는 8분이다. 정수리 주위 상부의 봉합되는 부분에 홍색 용의 가는 선을 두른다. 정면 표장은 중앙이 이화이고 좌우에 무궁화 가지가 교차하도록 한 도금 금속제이다. 턱끈은 흑색 가죽이며 도금 금속제 이화문양 단추로 좌우를 고정한다. 앞면 하단에는 흑색 가죽의 차양을 단다. 형태는 장관과 영관, 위관과 그 상당관, 준사관이 동일하다. 하사줄과 무관생도의 상모도 장교의 형태와 동일한데 모자 정면 표장은 무궁화 가지가 없는 너비 4분의 도금한 이화문양을 쓰도록 하였다.

셋째, 예의(禮衣)는 제2기의 대례의 형식과 동일하나 수장의 ‘人’자선 뾰족한 부분 위의 꽃 모양 자수를 무궁화문양에서 이화 문양으로 개정하였다.

넷째, 상의(常衣)는 제2기 상의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색상, 수장, 장식에 있어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색상은 흑색에서 다갈색으로 개정하였고 앞 중심을 여미는 단추는 이화문양에서 원형으로, 단추 개수를 7개에서 단추 5개로 간소화시켰다. 또한 가슴과 복부 좌우에 주머니를 부착하는데 가슴 주머니는 주머니 뚜껑에 도금한 원형 단추를 1개씩 달고 복부 주머니는 속주머니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수장은 소매 끝에서 앞면 약 2촌 위에 도금한 작은 이화 단추를 다는데 장관과 그 상당관은 3개, 영관과 그 상당관은 2개, 위관과 그 상당관은 1개이다. 그 위에 영관과 위관, 그리고 그 상당관은 각 병과마다 정해진 색으로 가는 용 선 1조를 넣고 그 위에 다갈색실로 직조한 선을 넣는데 대장과 정

横付하고 鎏金圓形製釦四個를 橫付홈 下士卒도 茶褐色絨質이니 製式은 將校와 同一하
호더 色絨織細線 兵料定色 一條(下士는 廣三分이오 兵卒은 二分)를 袖章 約二寸上에 一字形으로 付하고 鉗는 赤銅製圓形鉗를 前面 左右에 五個式付홈 但 武官生徒는 常衣 袖端上과 如히 定色人字線을 付홈

第十五 肩蔽는 茶褐色絨으로 호더 制式은 頸部를 周圍하야 膝下에 至하고 前面中央을 割開하야 角鉗로 簪홈

第十六 準士官의 禮裝常裝 品質과 制式을 參尉와 同一하 호더 禮帽 禮常衣 袖章에 階級線만 無하고 外套 袖章에는 定色絨細線을 付홈

령, 정위는 3줄, 부장과 부령, 부위는 2줄, 참장과 참령, 참위는 1줄을 ‘一’자형으로 단다. 하사졸과 무관생도의 상의(常衣)도 다갈색 용이며 형태도 장교 상의(常衣)와 동일하다. 수장은 소매 끝에서 앞면 약 2촌 위에 각 병과마다 정해진 색을 가는 용 선으로 달며 그 다음에 다갈색 용 선으로 계급을 구별하는데 하사는 너비 3분 1줄 위에 정교는 너비 1분 3줄, 부교는 2줄, 참교는 1줄이다. 상등 병과 1·2등졸은 너비 3분의 줄을 제외하고 계급대로 1줄씩 줄인다. 무관 생도는 소매 끝에서 앞면 약 2촌 위에 홍색 가는 용 선 1줄을 ‘人’자형으로 달며 단추는 적동(赤銅)으로 만든다.

다섯째, 이 시기에 바지는 예고(禮袴)와 상고(常袴)의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예고는 흑색 용으로 만든 장고(長袴, 기병 장교는 短袴)이며 길이는 체형에 따라 복부에서 발꿈치 아래에 이르도록 한다. 바지에 다는 계급장인 봉장(縫章)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나 선의 너비에서 달라졌다. 장관은 좌우 2줄은 너비 6분, 가운데 1줄은 너비 1분으로, 영관은 너비 6분으로 2줄, 위관은 너비 1촌의 1줄이다. 병과마다 정해진 색은 장관과 보병과는 홍색,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 공병은 자색, 계관은 청색, 의관은 심록색이다.

여섯째, 상고는 다갈색 용으로 길이는 체형에 따라 복부에서 발꿈치 아래에 이르도록 하고 바지 봉장(縫章)은 장교와 그 상당관이 홍색의 가는 용 선 1줄을 달도록 하였다. 편의에 따라 승마할 경우 단고(측면 선과 재질은 상고와 동일)를 만들어 입는다. 하사졸과 무관생도 바지의 제식과 측면 선은 장교와 동일하다.

일곱째, 예견장(禮肩章)은 이전 시기의 대례견장으로 제식 내용은 동일하다.

여덟째, 도(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와 제식이 동일하다. 도대(刀帶)는 흑색 가죽으로 만들되 장관과 영관은 뒷면이 홍색이고 위관은 청색이며 어여한 복장을 착용하더라도 폐착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도서(刀緒)도 이전 시기 제식과 같은 맥락이나 금사로 만든 직조한 선[金絲織線] 끝에 금선으로 만든 계란형[鷄卵形] 장식을 달도록 하였다. 위관 이하는 흑사로 직조한 선[黑絲織線]을 쓴다.

열째, 식대(飾帶)는 술 장식 색상이 변화하였는데 장관은 금사인(金絲紗), 영관은 자청사인(紫清絲紗), 위관은 황사인(黃絲紗)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식대의

양쪽 끝이 결합하는 부분에 도금한 버클을 달도록 하였다.

열한째, 식서(飾緒)는 금사로 만든 끈 아니면 견사(絹絲)로 만든 끈으로 한다.

열두째, 현장(懸章)은 견사로 너비 1촌의 넓게 직조한 끈이고 같은 색 실로 만든 술장식을 다는데 고등관아(高等官衙) 부관(副管)과 전령사(傳令使)는 황색으로 하고 위수(衛戍) 복무자(服務者) 주변(週番)은 흥색으로 한다.

열셋째, 하복(夏服)은 다갈색 명주[細縷] 또는 면직물이며 형태는 동복과 동일하다. 다만 영관과 위관 및 그 상당관과 하사졸, 무관 생도는 소매 끝에 병과마다 정해진 색의 가는 용 선이 없으며, 장관과 영관, 위관 및 그 상당관, 하사졸, 무관 생도 바지의 봉장이 없다. 무관 생도는 소매 끝에서 약 2촌 위에 다갈색의 가는 선을 ‘人’자형으로 단다.

열넷째, 외투는 다갈색 용이고 길이는 목 부분에서 무릎아래까지이다. 수장은 상의(常衣) 수장과 동일한데 계급마다 다른색 용 선은 제외한다. 상의(常衣)와 같은 도금 원형 단추를 앞면 좌우에 5개씩 달며 뒷자락을 엉덩이 아래로 트이게 하고 뾰[角]로 만든 단추 3개를 숨겨서 단다. 트임 위에 다갈색 용을 일자형으로 가로로 달고 도금한 원형 단추 4개를 가로 단다. 하사졸도 다갈색 용이고 형태도 장교와 동일한데 병과마다 정해진 색의 가는 용으로 만든 선을 1줄(하사는 너비 3분, 병졸은 2분)을 수장에서 약 2촌 위에 일자형으로 단다. 단추는 적동으로 만든 원형 단추를 앞면 좌우에 5개씩 달며 무관생도는 상의(常衣) 소매와 같이 병과마다 정해진 색의 ‘人’자형을 단다.

열다섯째, 견폐는 다갈색 용이고 형태는 목에서 무릎아래까지이며 앞면 중앙을 열리게 하여 뾰로 만든 단추로 고정한다.

열여섯째, 준사관의 예장과 상장(常裝)은 재질과 형태가 참위와 동일한데 예모와 예의, 상의(常衣), 수장의 계급을 나타내는 선이 없으며 외투 수장에는 병과마다 정해진 색의 가는 용 선을 단다.

1907년 규정은 전면개정이었지만 예복의 경우 형태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차이가 없다. 제일 큰 변화는 상복(常服) 즉 상모와 상의(常衣), 상고, 외투가 기존 흑색에서 다갈색이 된 점이다. 상의(常衣) 가슴과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생겼고 외투 규정도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상복(常服) 색상과 형태 변화는 당시 일본의

군복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소재가 다갈색 용이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³⁾

이 시기 군복에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추 문양과 예의 수장 '人'자선 끝에 금사로 자수한 꽃무늬가 무궁화[槿花]에서 이화(李花)로 바뀐 점이다. 현존 유물상으로 무궁화문양과 이화문양의 꽃모양은 형태상 큰 차이는 없으나 이들이 가지는 의미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무궁화와 이화는 대한제국 전체를 상징하는 국가문양이었으나 1907년 통감부 설치 이후로 대한제국 군대의 규모가 대폭 감소되면서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는 이왕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로 남게 된다. 이것은 이화문양이 한일강제병합을 전후하여 이왕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그 뜻이 변질된 것이다.⁵⁴⁾ 이화는 1895년 서양식 군복 첫 규정 이래 예복 모자 정수리 부분과 정면 표장에 계속 사용되어 왔지만, 단추와 수장 부분에서 무궁화가 이화로 바뀐 것은 군대 축소의 합의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규정상 변화는 명칭에서 정모가 예모로, 대례의가 예의로 바뀌었으며 대례견장이 예견장이 되었다. 바지는 예고와 상고의 두 가지가 되었으며 쇠서와 현장, 견폐가 추가되었다. 소례견장과 마장(馬裝)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1907년 규정은 기존과 달리 '복장규칙'과 분리되어서 독립된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예복 규정은 이전시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태도 동일하다. 상복은 이 시기에 바탕 색상이 다갈색으로 바뀐 점이 특징인데 당시 착장 사진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상을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림 17>은⁵⁵⁾ 한국자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시기의 유일한 상의(常衣) 자료로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에 5개의 금속단추와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주머니가 달려있다.

53) (일본 법령) 1905년 7월 11일 칙령 제196호, '육군전시복복제(陸軍戰時服服制)', 『官報』 명치38년 7월 11일. 이 제도가 다음해에 '육군군복복제'(1906년 4월 12일 칙령 제71호, "「陸軍戰時服服制」ヲ「陸軍軍服服制」ニ改ム", 『官報』 명치39년 4월 13일)로 개정되어 임시 제도에서 정식 제도가 되었다.

54) 목수현, 2008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4면.

55) 유희경·이강칠·이순자·허동화, 앞의 책.



〈그림 17〉 자수박물관
1907년 참장의 상의(常衣)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대한제국기에 발표된 군복 관련 법령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여 군복 형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함으로써 대한제국기 군복의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기 군복 차림을 규정하는 육군복장규칙은 1895년에 육군의 복장으로 정장, 군장, 예장, 상장(常裝)의 네 가지가 규정되었다가 1897년 개정에서 누락되었던 부분과 상장(喪章)이 보완되었다. 그 후 190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육군의 복장은 대례장, 군장, 예장, 반례장, 상장(常裝)의 다섯 종류가 되었다.

둘째, 대한제국기의 군복 제작법을 규정하는 육군복장제식은 1895년에 육군복장규칙과 제식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1897년부터는 복장규칙에 이어 제식이 별도로 제시되었다. 법령의 전면 개정 시기와 특징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대한제국기 군복의 형태는 네 시기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제1기(1895년 4월-1897년 5월), 제2기(1897년 5월-1900년 7월), 제3기(1900년 7월-1907년 10월), 제4기(1907년 10월-1910년)로 구분되었다.

셋째, 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제국기 군복 형태의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의 형태는 정수리가 둥근 형태의 모자와 상의(上衣)의 앞

여밈이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이다. 제2기의 형태는 예복과 상복 모두 상의(上衣)의 앞여밈이 매듭실로 늑골 장식을 한 것이다. 제3기의 형태는 예복 상의(上衣)는 더블 브레스티드, 상복 상의(上衣)는 싱글 브레스티드이다. 제4기의 형태는 예복이 이전시기와 다르지 않지만 상복의 모자와 상의(上衣), 바지가 다갈색이 되었다.

근대의 복장 규정은 복장 종류, 착용 상황, 구성품 등을 제시한 규칙, 형태에 대한 제작 방식을 제시한 제식, 그림 형태로 제시한 도식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육군뿐만 아니라 경찰, 문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규정은 새롭게 제도로 도입하는 이질적인 복식문화를 일관성 있게 제작하여 착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앞서 서양 복식을 받아들인 일본의 법령을 참고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되어 있던 근대 군복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군복의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에서 누락되어 있던 자료들도 최대한 함께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복식 구성품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난해한 한자를 현대어로 해석함으로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복에 관한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에 따른 시기를 구분해 보고 사진과 유물 등 대표적인 시각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방대하여 시각자료를 모두 망라할 수 없었으며 군복의 실제 착용 상황과 공급에 관해서 언급 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근대 군복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한제국, 육군 군복, 법령, 정장, 군장, 예장, 상장

투고일(2018. 8. 10), 심사시작일(2018. 8. 17), 심사완료일(2018. 9. 4)

〈Abstract〉

A Study on the Time-Specific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form
in Daehan Empire

Lee Kyungmee * · Nomura Michiyo ** ·

Lee Jisoo *** · Kim Minji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analyze all the regulations on military uniforms in the Daehan Empire, characterize the forms of military uniforms in each stage, and describe the process of variation in the unifor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s on military uniforms defined four forms of military uniforms-full dress (jeongjang), military dress (Gunjang), formal dress (Yejang), and everyday dress (Sangjang)-in 1895 and were supplemented with a mourning ribbon as well as with the missing parts in the 1897 revision. Then, the overall revision of the regulations in 1906 divided the military uniforms into five forms: full dress (Daeryejang), military dress, formal dress, semiformal dress (Banyejang), and everyday dress.

Second, the separate regulations regarding the forms of military uniforms in the Daehan Empire began to be established in 1897. According to the times of overall revision of the regu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 changes, the forms of military uniforms in the Daehan Empire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was from April 1895 to May 1897, the second one was from May 1897 to July 1900, the third one was from July 1900 to October 1907, and the fourth one was from October 1907 to 1910.

Third, based on the regulations, the stages for the forms of military uniforms in the Daehan Empire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The first stage is characterized by th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ourism Japanese & Business, Jangan University.

*** Ph.D Course, Dept. of Human Ecolog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MA, Dept. of Human Ecolog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helmet of round shape for the crown of the head as well as by the single-breasted center front of upper dress. The second stage is characterized by the center front of upper dress decorated with Hungarian knot for both formal and everyday dress. The third stage is characterized by the double-breasted center front of upper dress for formal dress and by the single-breasted center front of upper dress for everyday dress. The fourth stage is characterized by the same form of formal dress as before and by a dark brown hat, upper dress, and trousers for everyday dress.

The regulations on modern uniforms were carefully made of the rules regarding the types of dress, wearing occasion, and wearing components, the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the forms, and the drawing-based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were applicable to the uniforms of police officers and civil servants as well as to the military uniforms. It is believed that they helped make and wear heterogeneous costumes of the new system in a consistent wa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ways: It summarized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ern military uniforms so neatly that the changes of the uniforms could be seen at one view. The maximum amount of information that had been neglected by previous research was also summarized.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difficult to comprehend though they were used to describe the forms of wearing components, were transcribed into modern language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the regulations more comprehensible and helping further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military uniforms, they wer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ms, and some of the typical visual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and remains, we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in conducting research on the modern history of military uniforms.

Key Words : Daehan Empire, military uniform, regulation, full dress (jeongjang), military dress (Gungjang), formal dress (Yejang), everyday dress (Sangjang)